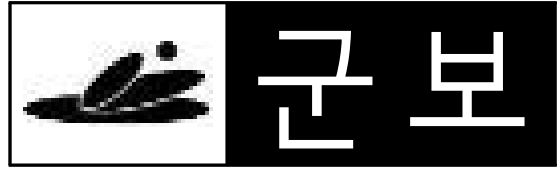


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598호 2020. 11. 13.(금)

조 례

- 예산군 조례 제2618호 :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

규 칙

- 예산군 규칙 제1502호 :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5
- 예산군 규칙 제1503호 :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7
- 예산군 규칙 제1504호 :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예 산 군 (편집 기획담당관 ☎ 339-7141)

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·이송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

2020년 11월 13일

예산군 조례 제2618호

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805명”을 “83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791명”을 “81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직급별 \ 기관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831					
정무직 계	1	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794					
4급	4	3		1		
5급(지도관 포함)	39	15	3	6	3	12
6급 이하	751					
전문경력관 계	2					
별정직 계	1					
6급 상당 이하	1	1				
연구직 계	4					
연구사	4	2		1	1	
지도직 계	29					
지도사	29			29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9조(정원의 총수)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05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91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9] 정원관리 기관별.직급별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과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<u>805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군수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<u>768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(지도관 포함)</td> <td>39</td> <td>15</td> <td>3</td> <td>6</td> <td>3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725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총계	<u>805</u>						정무직계	1						군수	1	1					일반직계	<u>768</u>						4급	4	3		1			5급(지도관 포함)	39	15	3	6	3	12	6급 이하	<u>725</u>						<p>제29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31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817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9] 정원관리 기관별.직급별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직급별 \ 기관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사무과</th> <th>직속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<u>83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군수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<u>794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(지도관 포함)</td> <td>39</td> <td>15</td> <td>3</td> <td>6</td> <td>3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75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총계	<u>831</u>						정무직계	1						군수	1	1					일반직계	<u>794</u>						4급	4	3		1			5급(지도관 포함)	39	15	3	6	3	12	6급 이하	<u>751</u>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80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768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(지도관 포함)	39	15	3	6	3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72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83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수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79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4	3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(지도관 포함)	39	15	3	6	3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75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, 아동학대 현장조사, 미세먼지 및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,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26명 증원 된 831명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을 791명에서 26명 증원된 817명으로 함(안 제29조)
- 나.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9)

제1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

2020년 11월 13일

예산군 규칙 제1502호

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안이유

-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『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대통령령, 2013.12.12.제정)』으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

제1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

2020년 11월 13일

예산군 규칙 제1503호

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안이유

-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『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대통령령, 2013.12.12.제정)』으로 제정·시행되었으며,
-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

제1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
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

2020년 11월 13일

예산군 규칙 제1504호

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용자조건) ① 시설자금의 용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
하며,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: 5천만원 이내
2. 법인 및 단체: 1억원 이내

② 운영자금의 용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으로 하며, 지원 한도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개인: 3천만원 이내

2. 법인 및 단체: 5천만원 이내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용자 이자는 면제한다.

제27조 본문 중 “제23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용자조건) ① 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, 법인체와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대부 이자는 면제한다.</p> <p>③ 용자금은 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, 비료·농약·유류·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23조(용자조건) ① 시설자금의 용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,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: 5천만원 이내</p> <p>2. 법인 및 단체: 1억원 이내</p> <p>② 운영자금의 용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으로 하며,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개인: 3천만원 이내</p> <p>2. 법인 및 단체: 5천만원 이내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용자 이자는 면제한다.</p>
<p>제27조(이자와 연체이자) 상환기간을 지나면 상환하는 용자금은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제26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용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7조(이자와 연체이자) ----- ----- 제23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1. 제안이유

- 자연 재해 또는 감염병(코로나19 등)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자금 까지 용자 확대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자금에 대한 용자조건 신설(안 제23조)